

의안번호	2206766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 12. 24.
추계번호	24D61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주민등록법」에 대한 특례) 신설	- 「주민등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인구 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 (「주민등록법」에 대한 특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인구감소지역¹⁾의 주민등록 특례(안 제24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주민등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21조~제28조) 규정²⁾을 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개인이 2개의 주소를 등록할

1)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수 있도록 주민등록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등록 특례 규정이 신설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여 이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부주소를 신고할 주민의 수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향후 인구감소지역에 부주소를 신고한 주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될지,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될지 여부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을 추계하기가 곤란함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현행법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유희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